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·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9. 2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10. 6.

다. 상정일자: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10. 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이주미】

마포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망원정 터(시지정 기념물 제9호)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·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3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「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」 관리·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내용

1) 위탁사무명: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·운영

2) 위탁기간: 3년 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3) 위탁사무 범위

-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시설물 관리 및 보호
- 망원정 터 관리인력(2명) 관리 및 근무실태 감독
- 망원정 터 관람객에 대한 안내 및 방문일지 비치 등 기록관리

4) 소요예산: 86,585천원

5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 또는 우선위탁(수의계약)

6) 위탁시설 개요

구분	망원정 터	풀무골 대장간
위 치	동교로8안길 23 (합정동)	성산동 499번지 (매봉산 일대)
규 모	토지 1,427m ² 건물 110.97m ²	토지 997m ² 건물 33.88m ²
비 고	정자 1동 숫을삼문 1동 관리사 1동 석담장(130m) 조경(수목)	진열품(풀무, 모루, 철재농기구, 엽전 등)
현장사진		

나. 추진 일정

- 1) 2023. 10. : 위탁 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(※공개모집 시)
- 2) 2023. 10. ~ 11. :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(※수의계약 시)
- 3) 2023. 12. :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 체결
- 4) 2024. 1. : 위탁사무 시작

4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('23.12.31.)인 「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」의 운영·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년간 재위탁('24.1.1.~'26.12.31.)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다만, 본 동의(안)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“재위탁”이 “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본문) 하는 것과 달리,
 - “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단서1)에 해당하여 “재위탁”임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.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「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」의 운영·관리 업무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²⁾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 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어,

- 향토문화유산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 및 관리할 경우 인건비·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향토문화유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문화진흥 도모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- 망원정 터는 2005년부터, 풀무골 대장간은 2004년부터 각각 마포문화원(1년 단위로 약정체결)에 위탁하였으나 2016년부터 통합하여 위탁하고 있음.

구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비고
재위탁	2016. 1. 1. ~ 2020. 12. 31.	마포문화원	수의계약
재위탁	2021. 1. 1. ~ 2023. 12. 31.		재계약
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「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」의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향토문화유산 시설의 관리·운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- 그러나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,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3) 아직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부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- 한편, 본 동의안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바,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3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 다만, 그 간의 향토문화유산 시설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향토문화유산 시설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희소하여, 수탁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, 향후 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립 시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: 없음

붙임 1

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

《 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: 구의회 동의 (P47) 》

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
② 구 의 회 동 의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구의회 동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▶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▶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 		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성과평가 결과 심의 ▶ 시정요구 결과 반영 ▶ 재계약 적정성 심의
④ 수탁기관 선 정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	-	
⑤ 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
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
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▶ 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▶ 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 		

《 성과평가 실시 (p44) 》

○ 평가대상

- 연간 사업비 제한 없이 모든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함
 - ▶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

○ 실시시기(조례 §21①)

- 위탁기간 내 1회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

○ 평가내용: 위탁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※ 【붙임】 참조

- 공통분야(40점):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
 - ▶ 평가내용: 사업계획 집행수준,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,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성, 사회적 가치 기여, 주민만족도 등
 - 개별분야(60점):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
 - ▶ 평가내용: 사업성과, 시설관리, 안전보건 관리,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, 서비스 개선 노력, 지도·점검이행노력,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
- ※ 사업성과(30점)는 수탁기관, 주관부서,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 특성을 반영한 지표 적용 가능

○ 평가방법(조례 §21②)

- 평가내용,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서 및 평가계획 수립 【붙임6】 참조
-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가능

○ 결과조치 등(조례 §21③)

- 평가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
 - ▶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과 재계약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가능
 - ▶ 전체 배점의 60% 이상 ~ 70% 미만 달성 시 “보완계획서” 작성
 - ▶ 평가결과 미흡(전체 배점의 60% 미만) 시,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(공개모집·직영전환 등 검토)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

제6조(사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정하도록 한다.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·성질·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
1. 구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법인
2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
3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
4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
5.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민간위탁기간
 6. 수탁자 선정방식
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9.>
1. 인적·물적 현황
 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 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 5. 사건·사고 현황
 6. 성과평가결과서
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

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